

# 예산총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72,768,000	26,183,040
일반회계	778,945,000	23,368,350
특별회계	93,823,000	2,814,690
공기업특별회계	81,892,000	2,456,760
상수도사업	48,917,000	1,467,510
하수도사업	32,975,000	989,250
기타특별회계	11,931,000	357,930
의료보호기금사업	2,109,000	63,27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536,000	16,08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875,000	86,25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자기금	1,004,000	30,120
주택사업	265,000	7,9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00	30
주차장설치사업	410,000	12,30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32,000	3,960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481,000	14,430
학교급식지원센터	4,118,000	123,54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970,333천원 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